



# 폰트의 저작권이 TeX 출력물에 미치는 영향

## On the Copyright of Fonts Embedded in TeX's Output

김도현 Dohyun Kim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nomos@ktug.or.kr](mailto:nomos@ktug.or.kr)

**ABSTRACT** Now becoming prevailingly PostScript or PDF, the output format of TeX engines or TeX-related utilities is able to embed copyrighted fonts, raising serious legal ques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essay tries to clarify when the distribution of TeX's output is hindered by intellectual property of fonts. Roughly summarizing, output files embedding scalable fonts with proprietary license cannot be publicly distributed without manifes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Certainly, scalable GPL'd fonts are also copyrighted works as computer program. Contrary to the interpretation by FSF, however, literary work contained in a PDF is not a derived work of embedded fonts. We can safely utilize GPL'd fonts in producing TeX's output without worrying about GPL's "viral effect."

## 1 문제의 제기

전통적으로 TeX으로 문서를 컴파일한 결과물은 DVI 포맷[14]이었다. DVI 파일 자체에는 폰트가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폰트의 이름만 지시될 따름이다. 이 때 폰트의 “이름”은 창작성(originality)이 없으므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sup>1</sup> 또한 이는 폰트의 이름을 상표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sup>2</sup>

하지만 근래에는 DVI 포맷보다는 포스트스크립트[22] 혹은 PDF[4, 21] 포맷<sup>3</sup>을 TeX 조판의 최종결과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Dvips[17]를 통하여 DVI를 포스트스크립트로 변환하거나 이를 다시 ps2pdf[23] 따위의 유ти리티를 이용하여 PDF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다. 또는 DVIPDFM[15]이나 DVIPDFMx[16]를 가지고 DVI 파일을 직접 PDF 파일로 바꿀 수도 있다. 심지어 pdfTeX[20]이라는 TeX 확장 엔진을 이용하면 .tex 파일로부터 곧바로 PDF 파일을 얻을 수도 있다.<sup>4</sup> 그런데 DVI와는 달리 포스트스크립트나 PDF 같은 새로운 포맷들은 그 안에 폰트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제작할

1.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90 판결에 따르면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저작물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선 [2, 214-218쪽] 및 [3, 157-159쪽]을 볼 것.

2.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야 한다 [2, 195쪽].

3. 오랫동안 사실상의 표준이었으나 최근 공식적으로 ISO 국제표준이 인정되었다 [11].

4. 한글에 국한하여 말하자면 pdfTeX을 이용하여 한글폰트를 임베드하지 않고 PDF를 만드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DVIPDFMx를 이용한다면 폰트를 임베드하지 않은 한글 PDF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수가 있다. 문서의 내용을 표현하는 텍스트와 글자의 모양을 표현하는 폰트가 합쳐져서 .ps 혹은 .pdf라는 확장자를 가진 하나의 파일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작권 혹은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소설가가 T<sub>E</sub>X으로 소설을 작성하여 컴파일하였을 때 그 산출물이 폰트를 포함하고 있다면 폰트의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당해 파일을 대외적으로 배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을 담은 PDF 파일을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sup>5</sup>으로 배포하고 싶어도 함께 포함되는 폰트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러한 부자유를 낳게 되고 어떤 경우에 비록 폰트가 포함되더라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글이 해명하고자 하는 첫번째 질문이다.

물론 폰트를 내장한 포스트스크립트 혹은 PDF 파일의 배포가 제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른바 상용폰트를 이용하는 경우에 국한될 것이다. 하지만 상용폰트와 대척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sup>6</sup>를 가지는 폰트도 이와 유사한 제한을 부과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GPL 라이선스의 주요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의 이용자는 GPL 프로그램을 마음껏 복제·배포할 자유가 있으나 다만 라이선스 정보(무보증 정보 포함)를 있는 그대로 함께 제공해야 한다.
- 프로그램 이용자는 마음껏 프로그램 소스를 수정하고 그 파생물을 배포할 자유가 있으나 다만 개작날짜와 개작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파생물에도 GPL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하며 소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여야 한다.

요컨대 GPL 저작물은 자유로이 복제·배포·개작할 수 있지만 그 파생물은 반드시 GPL이어야 하며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컨대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을 PDF로 만들면서 GPL폰트를 포함하였을 때 그는 소스인 .tex 파일을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자신의 소설에 GPL 라이선스를 붙여야만 하는가? 이것은 지나친 요구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T<sub>E</sub>X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유·공개폰트 중에서 쓸만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은글꼴[26]뿐인데 이 은글꼴이 GPL 라이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5. “공중의 영역”이라고 흔히 번역된다. 특허권·디자인권·저작권 따위의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하고 배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고 표현한다. 지적재산권은 두 가지 사건에 의하여 공중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하나는 권리자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더 이상 보호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자 사망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50년 동안이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나 단체명의저작물은 창작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50년까지이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청에 출원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이며, 디자인권은 특허청의 등록결정이 있은 다음날부터 15년 동안이다 [2, 44-45쪽]. 한편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타결에 따라 이러한 존속기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6. GPL은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마련한 저작물 사용허락 약정이다 [6]. 나라마다 법체계나 법용어가 상이한 까닭에 GPL의 한국어 번역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석상의 참고자료로만 삼아야 한다.

7. 은글꼴은 은광희의 L<sub>A</sub>T<sub>E</sub>X에 포함된 UHC Type1 폰트를 트루타입 폰트 형태로 변환·보완한 것으로서

과연 폰트의 GPL 라이선스는 더불어 하나의 포스트스크립트 혹은 PDF 파일을 구성하는 소설 텍스트까지 “전염”(viral effect)시키는가? 이것이 이 글이 규명하고자 하는 두 번째 문제이다.

## 2 글꼴과 폰트의 지적재산권

이 글에서는 글꼴(typeface)과 폰트(font)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글꼴 또는 서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별의 글자꼴”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다시 말해서 글꼴이란 글자들의 공통된 “모양”(appearance)을 의미한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표현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려지는 추상적인 외관을 뜻한다. 글꼴디자이너가 새로운 글자모양을 창안해 냈다면 이는 글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 폰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폰트 또는 “글꼴 파일”이란 이러한 글꼴디자인이 컴퓨터상에서 구체적인 파일의 형태로 구현되어 모니터나 프린터 따위의 출력기기에 글자를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 글꼴 파일 안에는 글자모양, 즉 글꼴의 정보가 각 폰트파일의 유형에 따라 규격에 맞게 저장되어 있다. 우리가 TeX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이용하는 Computer Modern 파일을 여기서는 글꼴이 아니라 폰트라고 부르자는 것이다.

이렇게 용어 구분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글꼴 혹은 폰트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두 가지이며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글꼴은 “아이디어”(idea)이고 폰트는 그 아이디어의 “표현”(expression)이라 할 수 있는데, 지적재산권법의 대원칙의 하나가 저작권법은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특허법적인 방식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sup>8</sup> 우리나라에서 글꼴을 보호하는 특허법적 방식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한다.

### 2.1 디자인보호법

글꼴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법은 디자인보호법이지만<sup>9</sup> 폰트를 보호하는 지적재산권법은 원래 UHC 폰트가 GPL이었으므로 은글꼴도 필연적으로 GPL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은글꼴 이외에도 공개 트루타입 폰트가 없지는 않다. 대표적으로는 백묵글꼴을 들 수 있다[13]. 하지만 백묵글꼴은 이른바 완성형 한글음절에만 국한된 글리프를 제공하며 품질도 은글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라이선스 조항을 가지고 있어 완전한 자유·공개 글꼴이라고 부르기 곤란하다.

8. 이것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라고 부른다. 저작권법은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디어는 특허법 등에 의하여 대단히 예외적으로만 보호될 수 있을 뿐이다[3, 43-57쪽]. 아이디어 자체를 널리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예컨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한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조선기술에 관한 논문이 쓰여졌다면 논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조선기술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마음대로 그 기술을 이용하여 배를 건조할 수 있다. 이는 경쟁촉진적 결과를 가져온다. 다만 그 기술이 특허권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9.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 글꼴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디자인이라는 과거에 “의장”이라고 불리던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원래 글꼴은 물품성이 없어서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저작권법이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권적 방식으로 글꼴을 보호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적 방식으로 폰트를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양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자. 첫째, 디자인보호법상으로 글꼴을 보호받으려면 우선 새로운 글꼴디자인을 창작하여 특허청에 출원하고 디자인권 등록을 결정받아야 한다. 이것이 저작권적 보호방식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저작권적 보호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필요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특허권적 보호방식은 소위 “차단효”를 가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글꼴디자인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디자인을 고안했다 할지라도 디자인권자는 당해 디자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보고 베끼거나 개작한 경우, 즉 접근(access)이 있는 경우에만 타인의 복제 혹은 개작행위를 금지할 수 있어서 차단효를 가지지 않는다. 우연히 동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졌더라도 저작권자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셋째,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설정등록한 후 15년동안만 보호되는 비교적 단기의 존속기간을 가지는 데 비해서 저작권은 저자 사망 다음해부터 50년, 혹은 단체명의 저작물이거나 컴퓨터프로그램이라면 창작한 다음해부터 50년이라는 긴 존속기간을 가진다.

따라서 *TEX*을 가지고 포스트스크립트나 PDF 파일을 만들 때 여기에 포함된 폰트가 특허청에 설정등록된, 그러나 아직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디자인을 이용한 것이라면 일단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이런 경우를 디자인권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키는 중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4조).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이러한 제한규정 덕분에 *TEX*을 이용하여 조판을 수행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하겠다. 디자인보호법의 취지는 폰트회사가 등록글자체와 동일·유사한 폰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METAFONT 프로그램 따위로 폰트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꼴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야 하겠지만 통상적인 *TEX* 이용에 관한 한 디자인보호법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 2.2 저작권법

하지만 저작권의 영역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저작권법은 조판에 대한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세 가지 경우로 범주를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첫째, 글자의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가의 문제

---

않았으나 2005년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명되면서 디자인의 정의에 “글꼴을 포함한다”는 구절이 삽입되었다.

이다. 둘째, 폰트 중에서 비트맵 폰트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가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폰트 중에서 윤곽선 폰트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가의 문제이다.

일견 디자인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다. 물론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디자인의 표현물만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다. 디자인의 표현물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부르면서 저작물의 일종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데 그것은 2000년도의 개정에 즈음하여 저작권법이 “분리가능성”이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물로서 보호한다고 못박게 되었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폰트의 글꼴디자인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폰트파일로부터 분리가능하고 예술적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를테면 유명한 서예가의 서체를 폰트로 만든 경우로서 그 서체만으로도 독자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폰트로 구현된 디자인은 저작물성이 없다. 바탕계열·돋움계열 따위의 통상적인 폰트라면 이러한 분리가능성은 인정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글꼴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성립할 수 없다고 해야한다.<sup>10</sup>

이러한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 제한의 흐름은 비트맵 폰트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법리로 나아갈 소지가 크다. 비트맵 폰트란 각 글자(glyph)마다 좌표내 점들의 비트값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며 충분히 확대하여 보면 대각선이나 곡선에서 계단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TEX*으로 조판을 하다보면 PK 폰트[7, 67쪽]가 PDF 등에 포함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PK가 바로 비트맵 폰트의 일례이다.

이러한 비트맵 폰트는 글꼴디자인의 단순한 비트적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통상 어떤 독자적인 분리가능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관한 명시적인 우리나라 판례는 없는 실정이지만 기존의 경향으로 보아 이러한 추론을 할 수 있고 학설도 대체로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듯 하다.<sup>11</sup>

10. 이러한 제한은 글꼴의 예술성과 실용성을 비교하여 예술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한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로 충분하고 따로 일반적인 저작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의형량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은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고 있다.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이 사건 서체도안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미술 저작물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저작물등록을 신청한 이 사건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한바 …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 정의조항은 이러한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판례는 미국법상의 분리가능성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165-179쪽].

11. 또한 이는 미국 연방저작권청의 공식입장이기도 하다. 연방저작권청은 “글꼴의 단순한 전자적 표현”은

글꼴 디자인과 비트맵 폰트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생각건대 설혹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조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컨대 책은 글꼴의 비트맵적 표현물이기도 한데 만약 이러한 것까지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 양상으로 보호한다면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출판해도 일반 시민들은 그 책을 마음대로 복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소설의 내용은 퍼블릭(public)하지만 책에서 이용하는 글꼴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글꼴이나 비트맵 폰트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윤곽선 폰트(outline font 혹은 scalable font)는 응용미술저작물로는 성립할 수 없지만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 이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윤곽선 폰트의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판결을 다수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sup>12</sup>

비트맵 폰트가 단지 점의 집합을 표현한 데이터에 불과하므로 프로그램이라 하기 곤란한 반면, 윤곽선 폰트는 화면을 일정한 좌표로 나누어 좌표값을 설정하고 이를 직선 또는 곡선으로 이동·연결시킨 뒤 폐쇄부를 칠하라는 일련의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컴퓨터로 하여금 글꼴을 출력할 수 있도록 수학적 연산작용을 수행시키는 프로그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곽선 폰트에는 포스트스크립트 폰트, 오픈타입(OpenType) 폰트

글꼴 자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비트맵 폰트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다 [9, 72–73쪽][12, 8]. 프랑스와 독일은 “글꼴의 보호와 국제기탁에 관한 비인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저작권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글꼴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비트맵 폰트의 저작권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 협약은 1973년 체결되었으나 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하게 되는데 아직 독일과 프랑스 2개국만 비준함으로써 유효한 국제협약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18].

12.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 판결. 또한 대법원 2001.6.26. 선고 99다50552 판결 및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19], 트루타입(TrueType) 폰트 따위가 포함된다. 여기서 트루타입도 컴퓨터프로그램인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판례는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명령도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우리법상 글꼴과 비트맵 폰트는 그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반면, 윤곽선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sup>13</sup> 따라서 PDF 전자문서에 폰트를 내장하는 경우, PK 폰트 따위의 비트맵 폰트를 내장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포스트스크립트 폰트나 트루타입 혹은 오픈타입 폰트 따위의 윤곽선 폰트를 내장할 때에는 폰트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합법적이라는 결론이 된다.

다만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는 가정 내의 이용이나 지인들간의 공유라면 자유사용(fair use) 법리<sup>14</sup>에 의하여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폰트의 일부 글리프만 내장하여 PDF를 만들 때 그 포함되는 비율이 소량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예컨대 확장한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은글꼴을 이용하여 문서를 조판하면서 몇몇 확장한자에 대해서만 상용폰트의 일부 글리프를 추출하여 포함시킨다면 이는 공정이용으로 보아 허용해야 할 것이다.<sup>15</sup>

### 3 GPL 폰트와 T<sub>E</sub>X 출력물의 저작권

이제 두번째 문제를 생각해본다.<sup>16</sup> PDF 전자문서에 은글꼴과 같은 GPL 폰트가 내장되어 배포되었을 때 GPL의 “전염성”으로 인하여 PDF 문서 전체에 대하여 GPL 라이선스가 강제되는가? 예컨대 어느 출판사에서 온라인출판을 하면서 T<sub>E</sub>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PL 폰트 내장의 PDF를 만들었다면 당해 T<sub>E</sub>X 파일의 소스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온

13. 글꼴과 비트맵 폰트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예컨대 윤곽선 폰트를 높은 해상도로 프린트한 후 이를 다시 스캐너로 읽어들여 autotrace 따위의 윤곽선 추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윤곽선 폰트를 만든다 해도 적어도 저작권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글꼴은 특허권적 방법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등록된 글꼴에 대한 이러한 도용은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소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

14. 미국법상 “공정이용”이라 불리는 법리인데 우리와는 달리 일반조항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물 사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성질, 사용된 부분이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잠재적 시장 혹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3, 312~313쪽].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자유 사용이 허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인용,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비영리 공연·방송, 도서관에서의 제한적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따위가 이에 포함된다.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8조까지 볼 것.

15. 오픈타입 폰트의 경우 폰트 내부에 도큐먼트에의 임베딩 허용에 관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를 fsType flag라 부르는데 installable embedding, editable embedding, preview & print only embedding, no embedding 등으로 구분된다. 앞의 둘은 내장·배포를 허용하는 것이고 뒤의 둘은 허용하지 않는 정보이다. 비록 no embedding 비트가 들어있다 해도 자유사용 법리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내부적 이용은 여전히 자유롭다 하겠다. 하지만 전자 둘의 경우라 해도 라이선스에 명시적 허용조항이 없는 한 내장·배포 허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폰트제작 프로그램의 기본값(default)이 editable embedding인 경우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폰트저자가 공정이용을 염두에 두고 일종 임베딩을 허용해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기피적으로 해석하여 비록 installable 또는 editable의 윤곽선 폰트라 할지라도 명시적 허용을 받은 후 이용함이 안전할 것이다.

16. 이 절은 [1]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라인 출판물 역시 GPL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아 누구나 마음껏 재배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2005년 봄, Scribus 메일링 리스트에서 문제가 제기되어[24] Slashdot에서까지 논란이 번진 적이 있었다[25]. 하지만 이들 논쟁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명확한 결론없이 단지 논란으로 끝나버린 감이 있다. 더욱이 그 이후에도 GPL의 칭안단체인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이러한 경우 여전히 GPL의 “전염성”이 PDF 혹은 포스트스크립트 문서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왔고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라이선스 FAQ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가 제시되어 있다[10, 5].

폰트 라이선싱은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라이선스 예외 문구는 일반적인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 예외를 모든 파일의 GPL 저작권 정보 직후에 삽입하십시오. “특별한 예외로서, 도큐먼트에 이 폰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베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서가 GPL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예외는 문서를 GPL로 만드는 다른 이유까지 무효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폰트를 수정하신다면 수정된 폰트에도 이 예외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이 예외를 당신의 라이선스에서 삭제하십시오.”

이 FAQ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단지 안내 혹은 권유에 지나지 않는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문구의 삽입 여부는 전적으로 폰트 저작자의 자유재량이고 온글꼴의 라이선스에도 이런 예외가 들어있지 않다. 이러한 예외가 라이선스에 삽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진정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가? GPL 라이선스 폰트를 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PDF는 그 자체가 곧 GPL 라이선스가 되어야만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PDF 파일로 제작된 소설책 하나 속에는 텍스트로 구성되는 소설, 즉 어문저작물과 GPL 폰트의 일부 글리프를 그대로 복제하여 삽입한 윤곽선 폰트, 즉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함께 들어 있다. 필자는 이 두 가지를 별개의 저작물로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설책 PDF 파일을 단일한 하나의 저작물이 아니라 소설과 폰트라는 두 개의 저작물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결합저작물(collective works)이라 부른다.

저작물은 그 결합방식에 따라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joint works)로 구분된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결합저작물은 각자의 이바지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학설에는 분리가능성설과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이 있다. 분리가능성설은 하나의 저작물의 각 구성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반해,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은 분리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단독으로 이용가능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보통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이 결합저작물보다 공동저작물을 더 많이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3, 84쪽].

우리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 선언함으로써 명시적으로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을 채택하고 있다. 2인 이상이 공동관계를 형성하여 창작한 공동저작물은<sup>17</sup>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5조, 제48조). 이에 비해 결합저작물이란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품의 창작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겉보기와는 달리 각각 별개의 저작물로 취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PDF 파일을 구성하는 어문저작물과 폰트의 각 창작자는 서로간에 어떠한 공동관계도 형성하지 않았다. 또한 결과물인 PDF 파일에서 어문저작물인 텍스트정보만 얼마든지 추출할 수 있으며,<sup>18</sup> 이렇게 추출된 소설 텍스트는 그 자체만으로 이용가치를 가지는 저작물이 된다. 물론 폰트정보만을 추출하여 이용하는 유ти리티도 누군가 만들 수 있겠지만, GPL 폰트의 경우 전체로서의 원본폰트가 항상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폰트추출은 실용성이 없다. 어쨌든 PDF 파일의 구성부분인 텍스트 정보는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폰트내장 PDF 파일의 저작물로서의 성질은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라 해야 한다.

결합저작물은 창작자 각자가 자기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될 뿐 다른 기여자의 저작권과 전혀 무관하며 이에 간섭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다. 이는 마치 가수가 부르는 가요에 있어서 작사자와 작곡자의 관계와 마찬가지이다. 가수의 가장에 의하여 작사자의 저작물과 작곡자의 저작물이 하나로 혼재되었지만, 각각을 얼마든지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가요는 결합저작물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PDF 전자문서에 내장된 폰트와 그 폰트에 의해 표현되는 문학적·학술적 사상·감정의 표현은 각각 별개의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작사자와 작곡자의 사망년도가 달라 저작권 존속기간 만료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듯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폰트와 어문저작물인 텍스트 정보도 각각 그 보호기간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sup>19</sup>

그런데 GPL 제2조, 즉 개작물에도 GPL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만약 개작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저작물 모두에 본 허가서가 적용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 원프로그램이나

17. 이때 공동관계는 단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뜻이며 반드시 의사연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3, 197쪽].

18. Adobe Reader에서도 검색·추출이 가능하지만, xpdf[27]에 들어 있는 pdftotext 따위의 유ти리티는 한 번의 명령으로 PDF 파일에서 전체 텍스트 추출을 수행한다. 만약 이러한 유ти리티가 없다 할지라도 손으로 필사하여 추출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어문저작물만을 분리하여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9. 물론 윤곽선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저자 사망 다음해부터인 어문저작물과 달리 창작한 다음해부터 50년이다.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이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의 집합물에 관한 조항은 이를테면 리눅스 배포판 CD처럼 동일한 CD에 여러 프로그램을 담아 배포할 때 그 중 일부가 GPL 라이선스를 취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PDF의 구성부분이 GPL 폰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 전체 저작물에 GPL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PDF에 GPL 폰트가 포함되는 경우 PDF 전체가 “감염”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한 그 한도내에서 라이선스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GPL은 저작물 이용허락 약관이다. 그것은 사적인 계약조항일 뿐이며 사적 계약은 강행법규에 어긋날 수 없다.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은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의 한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하는 한 그것은 무효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법의 법리에 의하면 결합저작물의 각 구성부분은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취급되므로 폰트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어문저작물 저작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결국 폰트의 라이선스가 어문저작물에도 전염된다고 해석된다면 그 한도 내에서 GPL 조항은 부분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요컨대 GPL의 전염성은 PDF의 내장 폰트와 텍스트 어문저작물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고 혹여 의사표시의 해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다. 전술한 GPL FAQ의 예외권고항목은 존재의의가 없는 것이다.

## 4 맷음말

PDF나 포스트스크립트 문서에 상용 윤곽선 폰트를 내장하여 배포한다고 해서 폰트의 저작권자가 이를 추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소송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데는 일정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며 이러한 비용이 손해배상 등으로 얻게 될 기대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굳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제소나 고소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그렇다고 해서 상용폰트를 내장한 전자문서를 제3자에게 배포하는 행위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다만 피제소의 가능성만 대단히 낮을 따름이다. 법치사회의 시민으로서 제소당할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불법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만큼 후안무치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PDF 따위의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도모함이 타당한데 이는 합법적으로 구매한—엄밀히 말하면 단지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임베딩의 라이선스를 얻어야 안심할

수 있다—상용폰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미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된 공개폰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글폰트에 관한 한 GPL 라이선스를 취하는 은글꼴의 존재는 독보적이다. 은글꼴의 GPL 라이선스가 어문저작물까지 “감염” 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앞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PDF나 포스트스크립트 문서에 포함된 폰트와 텍스트는 각각 독립적인 저작물을 구성하므로 폰트의 저작권이 텍스트의 저작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혹시 GPL을 이렇게 해석해야만 한다면 그러한 한도 안에서 당해 약관은 부분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옳다.

다만 은글꼴이 한글음절영역<sup>20</sup>과 완성형 한자 및 기호영역에 한해서만 글리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확장한자와 옛한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은글꼴의 완전한 한국어 폰트로서의 의미는 반감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확장한자와 옛한글을 표준에 부합하게 온전히 지원하는 자유·공개폰트를 만나보고 싶다. 정보사회에서 문화창달의 토대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글꼴과 폰트가 아니겠는가.

## 참고 문헌

1. 김도현, GPL 폰트를 내장한 PDF 전자문서의 저작권, 『비교법연구』 6권 1호 (2005), 35–62,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 송영식·이상정,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3.
3.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1.
4. Adobe Systems Inc., *PDF Reference Version 1.6*, 5th ed., Adobe Press, 2004. [http://www.adobe.com/devnet/pdf/pdf\\_reference.html](http://www.adobe.com/devnet/pdf/pdf_reference.html)
5. Free Software Found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GNU GPL — How does the GPL apply to fonts?* <http://www.gnu.org/licenses/gpl-faq.html/#FontException>
6. \_\_\_\_\_, *GNU General Public License*. <http://www.gnu.org/licenses/gpl.html>; 한국어 번역: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gpl.ko.html>
7. Alan Hoenig, *T<sub>E</sub>X Unbound: L<sub>A</sub>T<sub>E</sub>X & T<sub>E</sub>X Strategies for Fonts, Graphics, & M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8. Paul F. Schaffner, *Copyright and Digital Typography*. <http://www-personal.umich.edu/~pfs/essay2.html>
9. Roger E. Schechter and John R. Thomas, *Intellectual Property: The Law of Copyrights, Patents and Trademarks*, West Publishing Company, 2003.
10. David “Novalis” Turner, *Font Licensing*. <http://www.fsf.org/blogs/licensing/20050425novalis>
11. Steven J. Vaughan-Nichols, *PDF to become an open, ISO standard*. <http://www.linux-watch.com/news/NS7542722606.html>
12.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Fonts — Are Fonts Copyrightable? [http://www.tug.org/docs/html/fontfaq/cf\\_13.htm](http://www.tug.org/docs/html/fontfaq/cf_13.htm)
13. 白墨 Font Design 研究所. <http://www.font21.com>
20. 유니코드 U+AC00부터 U+D7A3까지의 영역

14. DVI (file format)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DVI\\_\(file\\_format\)](http://en.wikipedia.org/wiki/DVI_(file_format))
15. The DVIPDFM page. <http://gaspra.kettering.edu/dvipdfm/>
16. The DVIPDFMx Project. <http://project.ktug.or.kr/dvipdfmx/>
17. The Official Dvips Home Page. <http://www.radicaleye.com/dvips.html>
18. Font legalities — Filenames for T<sub>E</sub>X fonts. <http://www.tug.org/fontname/html/Font-legalities.html>
19. OpenType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OpenType>
20. pdfT<sub>E</sub>X. <http://www.tug.org/applications/pdftex/>
21. Portable Document Format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Portable\\_Document\\_Format](http://en.wikipedia.org/wiki/Portable_Document_Format)
22. PostScript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PostScript>
23. ps2pdf: PostScript-to-PDF converter. <http://ghostscript.com/doc/current/Ps2pdf.htm>
24. [Scribus] font management. <http://nashi.altmuehlnet.de/pipermail/scribus/2005-April/010587.html> 및 관련 스레드
25. Slashdot — Unintended Consequences of Using GPL Fonts. <http://yro.slashdot.org/article.pl?sid=05/04/17/2118203>
26. KLDP.net: Un Fonts. <http://kldp.net/projects/unfonts/>
27. Xpdf: A PDF Viewer for X. <http://www.foolabs.com/xpdf/>